

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적 규제방안

이 만 종*

《 차 례 》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한 형법상 규제
- III.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
- IV. 결론

I. 서론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니 예컨대 1991년 3월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은 모든 국민들을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 떨게 했으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발생한 낙동강 기름띠 유출 및 암모니아성 질소로 인한 식수 오염사건¹⁾과 뒤따라 발생했던 부산 검은 수돗물파동,²⁾ 영산강 오염문제³⁾ 등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하천과 식수공급 중단상태는 국민들을 경악과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생존의 위협이라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의 악취를 동반한 Smog현상,⁴⁾ 그리고 온갖 쓰레기와 화학성 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버린 농

* 공군사관학교 강사, 법학박사

- 1) 경북 구미시에 있는 두산전자 폐놀저장탱크파이프가 파열 30톤의 폐놀원액이 낙동강을 타고 흘러들어 영남 전지역이 폐놀파동에 휩쓸리게 되었으나 폐놀사태 이후 새로 제정된 환경관계입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 2) 담당 공무원의 무지로 필요량을 훨씬 초과한 활성탄 투입으로 발생
- 3) 1994년 4월에 표면화된 이 사건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 4) 스모그(smog)는 발생원인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공장배기가스가 원인인 뮤즈(Meuse) 계곡사건이나 도노라(Donora) 사건, 가정난방 배기가스가 원인인 London형 스모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 된 L.A형 스모그,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배기가스에 태양광선이 작용하여 발생된 동경형 스모그 등이 있다. 환경교육회/한국환경보호협회의 편, 「환경·공해사전」, 동화기술, 1989, 148면.

촌의 현실은 “환경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경각심을 뒤늦게나마 일깨워 주었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의 보전임을 절감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급속화한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 공해다발성 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대거 도입하였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환경과피요인이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근대화, 신공업지역의 형성⁵⁾ 인구의 도시집중, 과소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는 지역적 일반화, 양적 확대화, 피해의 심화라는 선진국의 수준으로 발생되기에 이르렀고, 필연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대책수립이 긴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1980년에 환경정을 신설하여 환경행정의 종합화·효율화를 도모하였고,⁶⁾ 입법으로서는 1963년의 공해방지법(법률 제1436호), 1977년의 환경보전법(법률 제3078호)이 제정·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에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⁷⁾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환경입법은 독일·일본 등과 달리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오염과 환경침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할 형사법상 규제적 측면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문제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형법사제의 성격, 즉 다른 규제수단에 비하여 형법은 그 제재력의 가혹성 때문에 보충적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는 점,⁸⁾ 또한 형사책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므로 인권보장을 위해 서라도 엄격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리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뒤늦게나마 1992년 4월 8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예고한 바 있었으며,⁹⁾ 1991년 5월 31일에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5) 중화학·비철금속 공단지역인 온산에서 발생한 주민의 집단괴질(한국일보 1985년 2월 14일자 사설 참조)이나 울산·여천지역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6) 1990년 1월부터는 이를 환경처로 격상하였다.

7) 현행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동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Triffler, 「Die Rolle des straffrechts beim umweltschutz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91(1979), S.346. ; Schultz, 「Abschied vom Strafrecht」, ZStW92(1980), S.634f.

9) 형법개정시안은 제26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의 제277, 279, 284조에서 각각 식품공해범죄,

4309호)을 제정하여 특별히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환경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과 분야별개별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환경관계법안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며 환경문제의 규제에 있어서도 형사적 제재가 빈번히 적용되었으나 이를 환경범죄와 환경형법의 시각에서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형사적 제재방법을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정도로 파악하여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법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경향을 반성하고 이제는 환경보호에 대한 형법의 역할을 새로이 분석, 구축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형법 고유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기능을 확인하고 실천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¹⁰⁾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관하여 특히 형법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이른바 현대형범죄와 형법 고유이론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환경행정법규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환경형법의 전개를 위한 이론 및 효율적 입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한 형법상 규제

환경오염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법률 제1436호)을 제정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실정법적 대응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 즉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에 있어 환경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담겨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환경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급박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에 대한 전국민의 심각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도 선진각국의 환경권사상을 받아들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 환경보전법(법률 제3078호)과 해양오염방지법(법률 제3079호) 등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 환경침해행위에 대해 행정법상 지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형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특별형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윤리적·규범적·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중대한 위법행위인 환경범죄행

환경범죄 및 그 과실범의 처벌을 입법예고하였다.

10)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2-13면.

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인식하에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새 형법전에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 1985년에 발족한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형법전에 신설하면서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¹¹⁾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형법개정시안기초 제3위원회는 개정시안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환경오염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¹²⁾ 이에 앞서서 1991년 5월 31일에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390호)을 제정하여 일본의 공해범죄법과 같이 기업의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하는 형사특별법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환경행정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과 분야별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환경관계법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1. 형법에 의한 제재

전통적 형법이론¹³⁾에 따라 개인적 범죄를 전제로 형성, 발전된 현행 형법전의 규정에 의해서도 환경범죄의 처벌이 가능한 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환경범죄에 대하여 현행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이론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형법각칙의 구성요건 중 환경범죄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조문은 살인죄(제250조), 상해죄(제257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손괴죄(제366조), 음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제192조 2항), 음용수 또는 수원(水源) 독물, 유해물 혼입죄(제193조 2항), 음용수 혼독치사상죄(제194조) 등과 같은 규정을 들 수 있다.¹⁴⁾

따라서 환경침해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수질오염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음용수 또는 수원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현행형법조문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하여 보면 첫째, 환경범죄는 대부분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해지

11)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 심의결과」, 형사법개정자료(8), 1989. 1, 389면 참조

12) 1992년 4월 8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시안 제26장 제277, 279, 284조

13) 김기춘, 앞의 책, 197면.

14) 김종원, 앞의 논문, 198면.

므로 죄의식이 아주 희박하고 따라서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둘째, 환경범죄의 특성인 전문성·간접성·완만성·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며 셋째, 행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동종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기업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2.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

우리나라에서는 1991. 5. 31. 법률 제4390호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 바, 이는 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8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동조 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동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동조 제3항).

이어서 동법 제3조는 동법 제2조에 대한 과실범 및 업무상과실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1항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동법 제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서는 누범의 특수가중을 규정하여 누범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양벌규정으로써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하는 각조의 벌금형을 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추정규정으로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을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과는 달리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해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이 자신들이 배출한 유해물질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당 배출회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가해자로 단정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범죄의 범위를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의 효용성에 대하여서는 일본에서 공해범죄법의 운용실태¹⁵⁾와 관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하다는 점과 이 법의 적용대상을 산업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오염원이 경합된 때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이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기업의 최고책임자급이 처벌되기는 어렵고 실무자격인 일반사원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다.

3. 행정형법에 의한 제재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환경범죄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개별적인 환경행정법규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환경행정법규는 바

15) 일본에서의 공해범죄법(사람의 건강에 관련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실을 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들이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경찰이 입건하여 검찰이 인지한 사건도 매년 수 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마저도 모두 과실의 입증불능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로 환경보전법이였다. 환경보전법은 총칙(제1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제2장), 대기보전(제3장), 소음·진동 등 규제(제4장), 수질 및 토양의 보전(제5장), 비용부담(제6장), 방지시설업(제7장) 등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제11장에서 벌칙규정을 두었고 환경범죄의 성질,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제66조에서 제69조에 걸쳐 4종류의 벌칙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환경관계법규에서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관계특별법의 법적제재가 주로 환경오염의 억제에 편중되고 환경보존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¹⁶⁾ 정부는 그때까지의 환경관계법을 대신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행정부 체계를 마련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Ⅲ.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

1. 환경형법의 정비방안

1) 환경형법의 독자성 인정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행위를 범죄로 성격지우고 이에 대해 형법전 내지는 특별형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지난날의 행정상 지도적 차원에서의 제재에서 탈피하고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도적 입장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형법개정시안에서 제28장에 따로 환경범죄 처벌규정을 마련한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고자 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⁹⁾

첫째, 환경침해 내지 환경오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환경오염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 및 범죄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날로 다양화·세분화·분산화 되어가는 환경관계법령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16) 구연창, “환경제재의 실태와 개선방향”, 법정신문 제27호, 1989. 8. 14, 8면.

17) 신동운, 앞의 논문, 26면.

18) 조병선, 앞의 논문, 6면.

19) 신동운, 앞의 논문, 27면.

다만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도 모든 환경범죄유형을 형법전에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몇 가지 유형만 형법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²⁰⁾ 우리나라 개정형법시안은 후자의 입장을 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환경오염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형법전에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환경범죄의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점검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이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환경형법의 입법화 범위

형법전에의 환경범죄 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유래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 제반여건의 변화와 구체적인 문제사안의 특수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융통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²¹⁾ 이 문제는 환경형법의 독자성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환경침해행위의 복잡성·다양성 및 환경행정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환경범죄유형을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행위를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환경관계 행정법규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과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입법화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환경형법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생명·건강 등과 같은 고전적인 법익에 한정할 경우엔 사실상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형법 개정시안 역시 생명·건강의 침해라는 전통적인 법익보호의 입장에 서있는데 앞으로의 환경형법은 고전적인 법익의 침해에 집착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나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과 같은 입법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생명과 자연환경의 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기본적 구성요건규정의 필요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규제기준 강화에 앞서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의 준수에 대한

20) 조병선, 앞의 논문, 6-8면.

21) 신동운, 앞의 논문, 29면.

기본적 원리의 설정과 행위의 준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일차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해지고 있는 환경오염행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환경형벌법규가 마련되어 일반범죄, 비신분범의 규정이 환경형법규정에 대한 보충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규정으로서 그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²²⁾

5)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환경범죄는 대량생산과 대량유통과 같은 경제적 발전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경범죄는 기업형범죄,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의해 자행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대규모의 배출시설을 가동시켜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면서도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환경오염방지장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고 단속에 대한 대비 정도로만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관계 행정형법이나 특별형법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른바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측은 이를 배출시설 운영경비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억제능력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거나 또는 개인기업의 기업주를 처벌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자연인이 환경범죄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환경범죄의 입증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일 그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이른바 기업조직체 책임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 기업조직체 책임론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고, 앞으로 기업형 환경범죄의 대응방안으로 연구·검토가 계속되어야 하고 입법론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환경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

1) 범죄성에 대한 인식제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인식은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사정으로 인하여 오염의 심각성이 보도될 때에야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제재가 가해지는 등 오로지

22) 신동운, 앞의 논문, 31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 수단 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범죄도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형사범죄와 동일한 범죄행위의 하나로 다루어야 하고,²³⁾ 환경범죄의 막대한 사회적 유행성에 따라 형사소추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경오염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환경범죄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의에 맞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속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형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단계나 재판과정 및 행정관계당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심각한 범죄성의 인식 못지 않게 다양한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체계화된 환경보전계몽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환경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이러한 교육과 계몽은 지속적·기술적이어야 하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정부당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기관이나 유관단체를 통하여 철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환경행정능력의 미비·비효율성 제거

환경오염 방지·단속을 위한 일선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능력이 구비·보충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집행력은 기대하기 어렵다.²⁴⁾ 특히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한 오염원인의 규명이 문제될 경우 오히려 대기업 등의 범법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묘한 수법으로 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고, 이때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²⁵⁾ 또한 환경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각 부처간의 힘겨루기나 경합 등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전업무의 분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결과로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동반한 담당부처의 일원화와 타부처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공존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23) 최근의 한 범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수원지오염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방화나 상해보다도 높은 정도의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익기/김성연,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69면.

24) 박수혁, “지구촌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 『현대법 이론과 실제』, 금강 김철수 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3, 294-296면.

25) 홍준형, “버려진 환경, 지켜지지 않는 약속”,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서울), 1994년 상반기, 205-206면.

3) 경찰·검찰·법원의 전문성 제고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관계 공무원의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철저한 사명감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선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범죄의 적발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은 전국적으로 환경범죄의 통일적인 형사소추의 방침을 결정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의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의 기구에도 환경범죄를 전담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환경범죄의 재판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와 연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직무수행에 자부심을 갖고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기의 진작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업의 자세·능력의 보완

이윤추구는 기업활동의 목적이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 국민전체의 불이익으로 나타날 경우엔 단호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환경오염의 대부분, 특히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은 어쨌든 배출시설물을 운영하는 기업이 주범이니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환경보전의 주요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제재방안의 하나인 행정형벌을 단순히 기업의 제반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비용은 막대한 지출이 있어야 한다.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혜택이라든가 국가재정을 지원하여서라도 그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경우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단순히 법적 규제만 강화하여 오히려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대한 사전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²⁶⁾ 또 기업에 대한 신상필벌주의가 적용되어 환경보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국가적 정책도 배려되어야 한다.

5) 민간인의 적극적 참여활동

형벌법규를 완비하고 형사소추기관이 그 조직정비 및 전문인력 확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궁극적인 해결은 환경보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우리 모두 책무라는 굳은 의지와 모든 국민이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각자가 서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이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²⁷⁾ 이러한 점에서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범죄에 대한 범

26) 구연창, 「축도해설 환경보전법」, 104-110면.

국민적인 감시망 확충과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민간조직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아울러 이러한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을 형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는 매우 국한된 제도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의 범위확장이나 집단소송의 인정²⁸⁾ 등 건전한 민간활동이 국가나 기업의 안이한 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현대사회의 환경오염피해는 이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법익보호의 경우처럼 형사제재의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런 인식에서 환경침해행위의 범죄성과 이에 대한 형벌법체계인 환경형법에 관하여 고찰을 하여 보았다.

먼저 일반론으로서 환경범죄개념의 명확화를 시도하고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와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해결곤란한 문제점 및 그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찰,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대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환경범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범죄는 기존의 전형적인 형법상 범죄와 구별되는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이론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즉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정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에서도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없게 되어 이는 결

27) 리우 환경선언은 제11원칙에서 “환경문제는 적정수준의 모든 관계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되며…”라고 하면서 국가는 이에 대해 각 개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 등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구환경대책기획단,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 리우 환경회의문서(국문본·영문본, 1992).

28) 법무부는 공해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구제를 위한 소송방식으로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같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과적으로 사회적 강자인 기업을 옹호하고 약자인 일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방법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침해행위는 일차적으로 행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겠지만 최근 환경자체의 법의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분산되어 있는 환경침해행위에 관한 처벌규정들의 조화 및 통일적인 제재의 필요성, 환경침해행위의 가벌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여 환경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법적인 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각국이 다투어 환경범죄규정을 형법전 속에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앞선 경험과 실천상황을 적극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 환경형법의 진로에 많은 참고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환경형법의 행정법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키고 구체적 법의침해에 한정하지 말고 추상적 위험범 내지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과 같은 견해를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형법전내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법규가 완비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므로 그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민에 대한 부단한 환경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 일반의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부서의 설치, 환경행정활동의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침해행위를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이를 형사적 제재로서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이것이 처벌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형법이 가지는 사회보호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주장한 것이다.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현대사회의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환경범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환경 자체를 무책임하게 훼손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형사법학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독일 Koln대학의 Hans Hirsch교수는 환경형법이 갖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견해 - 즉 Hassemer 박사의 형법규정의 확장에 대한 이의의 제기,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의 꾸준한 증가는 형법의 임무와 상치되는 것이며 이를 다시 핵심형법(Kernstrafrecht)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Stratenwerth 박사의 미래보장을 위한

형법의 새로운 임무부여는 불가피하며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투쟁이라는 강력한 임무가 형법에 부여되는 것이라는 견해 - 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 바, 이러한 계속되는 독일에서의 논의과정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환경형법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런 점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환경보호, 환경오염, 환경보호법, 환경형법, 형법, 생태계 파괴, 환경범죄예방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승한 역, 「인류의 위기」, 삼성문화문고(서울), 1974.
- 김일수, “우리나라의 서독에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수원, 1987.
- _____, 「공해의 형사적제재」, 법무자문위원회논설집 제4집, 1980.
- 김철수, “환경권”, 「환경법연구」 제3권, 한국환경법학회, 1981.
- 서거석,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신현덕, 「환경문제연구」, 동화기술(서울), 1989.
- 유기천, 「총론강의」, 일조각(서울), 1980.
- 이기우, 「환경법」, 학현사(서울), 1993.
- 이병극, 「환경학개론」, 삼영사(서울), 1984.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서울), 1988.
- 조병선, “형법개정시안의 환경범죄에 관련된 조문에 대한 의견서”,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한국형사법학회, 1991.
- 지구환경대책기획단,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 - 리우 환경회의문서, 1992.

〈외국문헌〉

- O.Triffterer, *Die Rolle des Strafr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Heft 1.
- Tiedemann, *Die Neuordnungen des Umweltstrafrechts*, 1980.
- 米田表邦, 「公害・環境侵害と刑罰」, 現代刑罰法大系 第二卷, 日本評論社(東京), 1983.
- 福田 平/大塚 仁, 「刑法總論 I」, 有斐閣, 1979.
- 山口裕之, 「みなまた病 刑事裁判の争点とその概要」, 法律のひろば 제41권 6호, 1988.
- 三井 誠, 「第三篇 豫見可能性」, 過失犯一新・舊過失論争(藤木英雄編), 學陽書房(東京), 1975.

Frederik R. Anderson. Daniel R. Mandelker and Dan Tarlock, *Environmental Protection : Law and Policy*, Little, Brown and Company(Boston), 1985.

J. Krier, *Environment Law and Policy*, 2nd. Ed. Bobbs Merrill Col.

【Abstract】**Regulation plan by the criminal law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rime**

Lee, Man Jong

The concept of protecting environment by criminal law is quite novel in Korea. The growing importance of criminal law relating to environmental crimes can be impressively demonstrated by spectacular ecological destruction as well as lingering pollution. In the densely populated and highly industrialized Republic of Korea, the last 20 years have seen a growing realization that any acts harming and endangering the environment must be opposed using the instrument of criminal law. An 1991 officially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Reform of the Korean Criminal Laws") proposed "Draft of New Penal Code" (a governmental proposal) include proposal to criminalize behaviors that pollute environment by dangerous emissions and create concrete danger to life and limb. In addition to a Special Regulatory Act on Environmental Crime of 31. May 1991 (Law No. 4390), pursuant to Japanese Example-Law for the Punishment of Cri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Adversely Affects the Health of Persons (Law No. 142, 1970)-, was enacted. This special criminal law tried to control polluting activities by traditional penal-code-type definition of offences. But the Law, like the Draft of New Penal Code, did not succeed to solve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such method. Instead, the law exposed the difficulties like Japanese experience.

Owing to such circumstances, researching on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still a concern to a scholar.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licit various theories on environment criminality and to compare of foreign environmental criminal law, for the purpose of legislative assertion against environmental criminality under the following contents.